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03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허성무 · 박지원 · 최형두
장철민 · 어기구 · 백혜련
안태준 · 오세희 · 이주희
정태호 · 이수진 · 이언주
윤준병 의원(13인)

제안이유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사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키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간사기관을 지식재산처로 변경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조정’에 머물러 있어 국가지식재산 정책 집행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2011년 법 제정 이후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지식재산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위원회 구성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해 국가 간 권리보호 체계가 긴밀히 연계되는 특성이 있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시 기존 법

령과의 충돌·중복 방지 및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위원회에 대한 ‘통보’ 수준에 그쳐 법령 간 충돌·중복 방지 및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 법령에는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에 대한 하위 법령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에서 ‘심의·의결’로 변경함(안 제6조).

나. 지식재산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 구성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7조).

다. 지식재산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에 있어서 위원회 ‘통보’를

‘협약’로 변경함(안 제13조).

라.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조정”을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조정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조정하러”를 “심의·의결하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4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통보)”를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와”로, “통보”를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받은 법령”을 “법령”으로, “의견을”을 “기존 법령과의 충돌·중복,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를 “협의”로 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u>심의 · 조정</u> 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 · 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u>심의 · 의결</u> -----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 · 조정</u> 한다.	② ----- -- <u>심의 · 의결</u>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5. ----- ----- ----- ----- <u>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u> ----- -----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u>심의 · 조정</u> 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u>심의 · 의결</u> <u>하려</u> ----- ----- -----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⑦ (생략)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책 등”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 및 제2항의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①·② (생략)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50명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협의) ① -----

----- 위원회와 -----
----- 협의-----.

② ----- 법령-----

----- 기존 법령과의 충돌
· 중복,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
-----.

③ ----- 협의 -----

-----.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①·② (현행과

<u><신 설></u>	같음) <u>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